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사업 국고 지원〉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2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참고사항 .....                           | 1 |
| IV . 검토의견 .....                            | 2 |
| 1.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사업 국고 지원(안 제9조제2항 신설)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 조제2항 신설).

## IV. 검토의견

### 1.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사업 국고 지원(안 제9조제2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li> <li>- 다만,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li> </ul> </li> <li>※ 보조금법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현충시설 명시(별표 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충시설(顯忠施設)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li> </ul> </li> </ul> |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sup>1)</sup>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별표 1에서 정하고, 별표 2에서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sup>2)</sup>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등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충시설 지정 시에는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 현충시설 관리 및 훼손·멸실 등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국내 현충시설 종류별 현황 ]

(2024. 12. 기준)

| 구분   | 계     | 비석    | 탑   | 동상  | 조형물 | 기념관 | 사당 | 생가 | 공원 | 장소등 |
|------|-------|-------|-----|-----|-----|-----|----|----|----|-----|
| 계    | 2,331 | 1,168 | 538 | 169 | 56  | 108 | 57 | 47 | 24 | 164 |
| 독립운동 | 998   | 478   | 106 | 98  | 11  | 79  | 48 | 47 | 6  | 125 |
| 국기수호 | 1,333 | 690   | 432 | 71  | 45  | 29  | 9  | 0  | 18 | 39  |

자료: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은 소유주체에 따라 국가(군부대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기념사업회 등)으로 분류되는데, 민간이 소유하는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건립 및 관리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현충시설의 약 56%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05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사업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었으나, 정부는 2005년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자기책임 명확화 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총 533개 국가보조사업 중 163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sup>3)</sup>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충시설 사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양사무인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건립·관리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경우 당시 이양된 재원도 다시 국고로 환원되어야 하는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제외 대상 사업 중 현충시설 사업만 국고로 환원 시 타 사업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만 별도로 법률에 보

---

3)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한시적(2014년 12월 31일까지)으로 도입

조금 지급을 규정할 경우 법체계 전체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 국비 보조 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이었던 현충시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유 현충시설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을 감안하였을 때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05년 1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소유 현충시설의 수는 총 786개였으나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총 1,203개로 약 53%가 증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소유 현충시설은 대부분 동상, 탑·비석 등으로 별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현충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임.

#### [ 2005년 소유주체별 현충시설 현황 ]

(2005. 1. 1. 기준)

| 구분   | 계     | 지자체 | 국방부 | 기념사업회 | 교육기관 | 문중대표 | 기타  |
|------|-------|-----|-----|-------|------|------|-----|
| 계    | 1,428 | 786 | 72  | 209   | 75   | 106  | 180 |
| 독립운동 | 626   | 320 | 3   | 59    | 45   | 106  | 93  |
| 국가수호 | 802   | 466 | 69  | 150   | 30   | -    | 87  |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소유주체별 현충시설 현황 ]

(2024. 12. 31. 기준)

| 구분   | 계     | 지자체   | 국방부 | 기념사업회 | 교육기관 | 문중대표 | 기타  |
|------|-------|-------|-----|-------|------|------|-----|
| 계    | 2,331 | 1,203 | 133 | 380   | 134  | 130  | 351 |
| 독립운동 | 998   | 508   | 3   | 117   | 56   | 129  | 185 |
| 국가수호 | 1,333 | 695   | 130 | 263   | 78   | 1    | 166 |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은 48.6%<sup>4)</sup>로 재정자립이 취약하고, 2024년 재정자립도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41.7%p(최고: 서울 본청 77.3%, 최저: 전남 본청 25.6%),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은 58.1%p(최고: 서울 강남 65.3%p, 최저: 전남 신안 7.2%p)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 정도가 큰 상황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충시설 사업 관련 예산 부족으로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목적 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개요」

###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단위: 단체수)

| 구분        | 합계  | 구성비(%) | 시·도 | 시  | 군  | 자치구 |
|-----------|-----|--------|-----|----|----|-----|
|           |     |        |     |    |    |     |
| 합계        | 243 | 100.0  | 17  | 75 | 82 | 69  |
| 10% 미만    | 9   | 3.7    | -   | -  | 9  | -   |
| 10~30% 미만 | 167 | 68.4   | 5   | 43 | 70 | 49  |
| 30~50% 미만 | 54  | 22.1   | 8   | 29 | 3  | 17  |
| 50~70% 미만 | 12  | 4.9    | 3   | 6  | -  | 3   |
| 70~90% 미만 | 1   | 0.4    | 1   | -  | -  | -   |
| 90% 이상    | -   | -      | -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순계 및 총계 예산 규모」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최고·최저]

(단위: %)

|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br>자치시 | 도               | 특별<br>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
|----|---------|-----------------|-----------|-----------------|-----------|-----------------|-----------------|-----------------|
| 평균 | 46.1    |                 |           |                 |           | 27.2            |                 |                 |
|    | 77.3    | 43.9            | 63.8      | 36.5            | 38.5      | 31.5            | 17.2            | 28.1            |
| 최고 | 77.3    | 50.4<br>(인천 분청) | 63.8      | 50.6<br>(경기 분청) | 38.5      | 63.5<br>(경기 성남) | 43.8<br>(울산 울주) | 65.3<br>(서울 강남) |
| 최저 | (서울 분청) | 37.3<br>(대전 분청) | (세종 분청)   | 25.6<br>(전남 분청) | (제주 분청)   | 11.3<br>(전북 남원) | 7.2<br>(전남 완도)  | 12.3<br>(대전 동구) |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순계 및 총계 예산 규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충시설 사업은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 중 하나로, 현충시설 사업만을 국가 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지자체별로 동일 국가유공자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

서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국고 보조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9조제1항은 보조금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을 동 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상 사업 및 보조금 대상 제외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290여개의 사업 중 하나인 현충시설 사업에 대해서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생략)<br><u>&lt;신설&gt;</u> |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 ② (생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문의처

02)6788-5152